

제 501 호

1975. 5.1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구 자 춘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교 시

제 61 호 도시계획고도지구 지적승인	3
제 62 호 도시계획시설(지하보도(지하상가) 및 시내버스주차장)결정및 지적승인	4
제 63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일부변경및 지적승인	5
제 64 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일부변경	6
제 65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고시	6

◎ 공 고

제 100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일부변경을 위한 공람공고	7
제 101 호 서울도시계획사업(도시고속철도)종트선 공사완료공고	8
제 104 호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환지계획 공람공고...	8

◎ 사 령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61 호

도시계획고도지구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15 호 (73.3.31)

건설부고시 제 49 호 (75.4.3) 로 결

정고시된 고도지구를 다음과 같이

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

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

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첨부: 1. 도시계획고도지구 지적승인

조서 (도면표시와 같음)

2. 지적고사도면 (도면생략)

1975. 5. 6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 고도지구 지적승인조서

구 분	상	치	면 적	고 도 계 한
고도지구	충구울지로 6 가 및 성동 구신당동 일부지역		6,900㎡	최고고도지구: 현지반고 (평균+20m)에서 12m이하
"	"		78,190㎡	최고고도지구: 현지반고 (평균+20m)에서 9m이하
"	성동구신당동 일부지역		8,400㎡	최고고도지구: 현지반고 (평균+20m)에서 6m이하
"	"		1,010㎡	최고고도지구: 현지반고에서 최고 23m이하

별첨: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2호

도시계획시설(지하보도
(지하상가) 및 시내버스
주차장) 결정 및 지적승인

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
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
(73.4.4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
라 이를 고시한다.

1. 당시 도시계획시설(지하보도(지
하상가) 및 시내버스주차장)을 다
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

1975. 5. 7.

서울특별시

가. 지하보도(지하상가) 시설조서

시 설 명	위 치	폭 원	연 장	면 적	비 고
서울운동장 지하도(지 하상가)	중구을지로 6가18의11	B=13 ^m	L=49 ^m	233.79 m ²	정계천측상가 49.44 m ² 상가 2.5m 양측보도 8m
"	"	B=13 ^m	L=33 ^m	177.53 "	을지로측상가 51.03 m ² 상가 2.5m 양측보도 8m
계				411.32 "	

나. 주차장 시설조서

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주차장(시내버스)	월계동 24 - 1	4,923 m ²	고가교 가설시까지 사용
	25 - 1	(1,492 평)	진야교통
	29 - 1	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갈유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
보관함.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63 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변경 및 지적 승인

1. 각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하
 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
 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(73.4

4)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
 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
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
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 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5. 5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소로 일부변경조서(별첨)

도시 계획 소로 변경 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	연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소로	2		8m	180m	염리동 128-18	염리동 27-46	서울여자중학교부
변경	"	2		8m	200m	"	"	지내에서 일부변경
기정	"	3		6m	66m	미아동 98-89	미아동 98-14	위치일부변경
변경	"	3		6m	60m	"	"	
기정	"	2		8m	40m	사당동 708-319	사당동 155-5	현황도로에 맞추위 위치변경
변경	"	2		8m	40m	"	"	
기정	"	3		6m	66m	사당동 145-1	사당동 137-11	현황도로에 맞추 위 위치변경
변경	"	3		6m	66m	"	"	
기정	"	2		8m	45m	상수동 2가 255	상수동 2가 257-1	구획정리지구의접 합관계로 조정
변경	"	2		8m	45m	"	"	
기정	"	3		6m	90m	중화동 148-126	중화동 148-48	현황도로에 맞추 위 조정
변경	"	3		6m	90m	"	"	
거정	"	4		4m	43m	상봉동 113-29	상봉동 113-28	"
변경	"	4		4m	25m	"	" 113-34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(도면생략)

관계도서는 서울시청 및 관할구청에보관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64 호
 도시계획시설(도로)지적일부변경
 1.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
 다음과같이 지적일부 변경하여 승인하
 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
 시제 123 호의 규정(73.4.4)에 의하
 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
 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
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
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5. 5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노선변경조서

구분	등분	류별	번호	축원	연 장	기 점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3	37	12 [㎡]	1.03 ^㉞	상도동(대3-18)	상도동(중3-35)	지적일부변경
변경	"	3	37	12	1,030	"	"	

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65 호
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 지정 고시
 문화재보호법 제 54 조의 2 및 서울
 특별시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6 조 동제
 8 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

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한다.

1975. 5. 10

서울특별시장

지 정 목 록

종 별 및 지정번호	명 칭	수 량	소 재 지
서울특별시 지방유형문화재 제 28 호	삼 층 석 탑	1 점	성북구삼북동 97-1
제 29 호	석조광각부도	1 점	"
제 30 호	석조미륵불입상	1 점	"
제 31 호	석조비로자타불좌상	1 점	"
제 32 호	신 회 궁 거	건물 1 동 석제및석축 2 개소	종로구신교동 1

공 고

◎서울특별시 공고 제 100 호

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일부 변경을 위한 공람 공 고

1. 당시가 시행중에 있는 시행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일부를 아래 조서와 같이 변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4 조 및 가. 사업계획 일부변경조서

동법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 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시장용지와 인근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통지를 받지 못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.

지구명	위 치	면 적	변 경 내 용		비 고
			변 경 전	변 경 후	
시흥지구	시흥지구 제비지 110 구획	824.10 평	시장용지	준공업지역	시장용지 제지

1975. 5. 6
서울특별시 장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01호

서울 도시계획사업 (도시고속
철도) 종로선 공사완료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43 호 (73.4.9) 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고속철도 종로선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제 1 항 및 동법 제 46 조 제 3 항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지하철본부에 비치한다.

1975. 5. 7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집행자 : 시점 - 갈원동 3 번지
종점 - 전농동 102 의 5 호
2. 사업명 : 도시계획사업 (도시고속
철도) 종로선 건설
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4. 연 장 : 9.54 km
5. 사업기간 : 73.4.9-74.8.15
6. 준공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104호

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
환지계획공람공고

1. 당시가 실시하고 있는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6 조 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을 수립 하였기 동법 제 47 조 및 제 33 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관계도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2.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 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3. 이 공고에 대한 통지문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오나,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.

1975. 5. 12

서울특별시장

사 명

○ 1975. 4. 15

관리동배수 지방토목 이준해
지 사무소 지원보시보
지방토목지원보에 임함.
1호봉을 급함.

관리동배수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.
대현산배수 지방토목 안희천
지 사무소 지원보시보
지방토목지원보에 임함.
1호봉을 급함.

대현산배수지사사무소 근무를 명함.

○ 1975. 4. 18

행정과 지방행정 전형문
주사보
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.
1호봉을 급함.

행정과 근무를 명함.

○ 1975. 5. 6

용산구보진소 지방행정 이민수
사무관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○ 1975. 5. 7

치수과 지방토목 김석기
(직위해제중) 기 사
부직을 명함.
치수과 근무를 명함.

용산구보진소 지방보진 박과익
기 사
마포구보진소 방역과장 직무대리에 보함.

○ 1975. 5. 9

진호출장소 지방행정 교상수
주 사
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.2호
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
처함.

마 포 구 지방행정 이강희
시 기 보
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.2호
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용산구근무를 명함.

영 등 포 구 지방행정 박 순
시 기 보
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.2.3호
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.

서대문보진소 지방행정 김양우
주 사 보
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.2호
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관악구근무를 명함.

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유순일
시 기 보
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.2호
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양서출장소근무를 명함.
마 포 구 지방행정 조이화
시 기
지방공무원법제 69조제 1항 1.2.3호

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
에 처함.

성북구근무물 명함.

시설관리과 지방행정
서기보 김 하 진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

1.2 호의 규정에 의거 건
책에 처함.

관악구근무물 명함.

남산공원관 지방행정
리사무소 서 황 규 식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

1.2 호의 규정에 의거 건
책에 처함.

영등출장소 지방행정
주 조 종 완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

1.2 호의 규정에 의거 감
봉 3 월에 처함.

서울특별시